

일본	3월 수출현안/ 수입제도 모니터링
----	--------------------

I | 일본 수입식품 감시지도계획 발표

2016년도 일본 후생노동성 수입식품 감시지도계획의 주요 내용을 소개.

【수입식품 감시지도계획 주요 내용】

- 전년도 중점적으로 실시해 왔던 냉동가공식품 등의 성분규격 위반 상황을 감안 금년도에도 가공식품의 성분규격에 관한 모니터링 검사를 중점 실시할 계획임
- 현재 운영중인 수입식품사전확인제도 관련, 등록신청 업체 요건을 HACCP 인증 취득 업체로 한정하여 제도를 강화할 예정임
- 수입식품 감시지도 실시 기본사항
 - 후생노동성(이하 본성)은 특정국가, 지역 또는 특정인이 생산한 수입식품등이 식품위생상 위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법제8조 제1항 또는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포괄적 수입금지조치를 취한다.
 - 본성은 계속해서 법률 위반을 범하는 수입자에 대해서 개선지도 조치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수입자에 대한 영업금지 또는 정지 조치를 명할 수 있다.
 - 본성은 법률위반 사례가 판명되었을 경우 법제63조에 의거 위반사례를 공표함
 - 검역소는 수입신고서등에 의해 식품의 규격 또는 기준에 대한 적합상황에 대해 확인하며, 수입식품의 식품안전 상황에 대해 폭넓은 감시를 위해 모니터링 검사를 계획적으로 실시한다.
 - 검역소는 식품위생상의 위해방지를 위해 법률 위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는 수입식품등에 대해 검사를 명령한다.
 - 검역소는 수입자가 자주적으로 안전관리를 추진토록 강연회 개최 및 수입전 지도등을 실시한다.
 - 검역소는 법률위반이 판명되었을 경우 폐기조치등의 지시와 함께 수입자에 대한 지도등 재발방지위한 조치를 취한다.
 - 수입후 국내유통단계에 있어서는 각 지자체가 감시지도를 실시함과 동시에 범위반이 발견되었을 때는 검역소와 연계하여 수입자에 의한 회수등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조치한다.

II

통관 보류 및 해결, 폐기, 반송 사례 (‘16년 3월)

월	품목명	제조사	부적합내용 및 공표일	수입자 명	조치상황
3월	생식용 냉동 새조개	KYUNG NAM MARINE PRODUCTS CO.,LTD	세균수 초과 검출 (세균수 2.5×10^6 /g, 대장균군 양성) 2016.3.30	(주)진미식품	폐기 또는 반송 (전량보관)
	야채조정품 (생강 꿀절임)	HAN SUNG FOOD CO.,LTD	폴리솔리베이트 0.055g /kg 검출 2016.4.7	(주)케이	폐기 또는 반송 (전량보관)

위반사례 합계 2건 발생

□ 시사점

○ 생식용 냉동 새조개

- 냉동 새조개의 경우 해동하여 바로 생식으로 먹는 제품임에 따라 세균수 가 기준치 이내여야 함

세균수 기준

냉동식품중 생선피레, 조갯살 등으로 처리한 선어류를 생식용으로 동결시킨 제품

성분규격	세균수(일반생균수)	대장균군	장염비브리오
	100,000/g이하	음성	100이하/MPN

○ 야채조정품(생강 꿀절임)

- 유화제로 사용되는 폴리솔리베이트의 야채류의 캔 또는 병에 담긴 제품의 기준치는 0.030g/kg으로 기준치가 설정되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시 됨